

청주지방법원 2023. 6. 9 선고 2023가단55941 판결 [보증채무금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5. 12.

판 결 선 고 2023. 6. 9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해 2022. 8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. 7. 5.경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27. 7. 20., 이자 연 20%(매월 20일에 지급)로 정하고,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약정과 함께 대여하였으며, 이때 피고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.

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2022. 8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 **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**

피고는 “채권자가 피고의 가게에 찾아와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기에 무서워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이다”고 주장하나, 달리 위 날인행위 내지 피고의 연대보증의사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## **3. 결 론**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.

판사 김룡